KiRi Weekly 2016.8.29.

이슈 분석

#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본질적 업무 위탁 필요성

김석영 연구위원, 이승준 연구위원

요약


■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 등 인·허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임. 그러나 보험회사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의 경우 본사의 영향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사 및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. 일부 보험회사는 단순한 업무 등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화 과정에서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할 수 있음. 향후 핀테크가 활성화되는 경우 본질적 업무라도 업무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자회사 또는 제3자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 금융업 인·허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의사결정 등 핵심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 보다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.


■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는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험회사도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 금지됨.

- 업무위탁이란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함.[1)]
- 동 규정상 보험의 본질적 업무는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, 보험회사 공시, 보험계약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·결정,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, 재보험 출·수재,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등임.

■ 금융당국이 본질적 업무에 대해 제3자에게 업무위탁을 금지하는 이유는 금융업의 인·허가 취지를 훼손하여 인·허가 행정행위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임.

- 금융업은 진입 시 금융당국의 인·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본질적 업무의 제3자 위탁 허용은 금융업의 인·허가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음.
  -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금융업에 있어 인·허가 제도를 운영함.

1)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 2항.

- 그러나 보험회사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의 경우 본사의 통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사 및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.
  - 자회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사업방법을 지도 · 감독할 수 있으므로, 업무수탁 기준이나 방법을 충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.
  - 금융당국은 현재 자회사 설립 시 신고 · 승인절차를 받으므로, 사전적으로 자회사 업무를 관리 · 감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.

- 일부 보험회사는 단순한 업무 등을 자회사에 위탁함으로써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나, 인수지침이나 지급심사지침 등의 자동화과정에서 본질적 업무의 위탁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.
  - 보험회사는 업무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보험금 청구서 접수와 같은 단순업무는 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동 업무는 시스템으로 입력되는 등 거의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음.
    - 보험금 청구서 접수는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업무가 아니므로 위탁이 가능함.
  - 그러나 보험금 청구 접수와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자회사에서 이루어질 경우 위탁금지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짐.
    - 금융당국은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권장하고 있으며, 소액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는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지급결정이 내려져서 24시간 안에 지급이 가능함.
    - 자동화 매뉴얼상 자회사의 업무처리 시 아무 이상 없이 바로 통과되어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 규정위반의 소지가 있게 됨.

- 향후 핀테크가 활성화될 경우 본질적 업무라고 해도 자동화가 가능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경영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자회사 또는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함.
  - 자동 언더라이팅, 인공지능에 의한 지급심사업무 등의 경우,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처럼 외부 위탁을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.
    - 예를 들어, 인공지능 보유 전문 수탁자 출현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음.
  - 핀테크 시대 도래 및 업무효율화 추구가 절실한 현 시점에서 경직된 본질적 업무 위탁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재해석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- 금융업 인 · 허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 의사결정 등 핵심적 사항을 제외하고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 보다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.
  - 위탁 업무라 해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최종책임은 보험회사가 지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. KiRi